

## CCTV 설치·운영 규정

**제 1 조 (목적)** 학교 내에 설치된 CCTV는 학교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설치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 (관리체계)** CCTV는 다음의 체계로 관리 운영 한다.

- ① 운영부서 : 총무팀
- ② 관리부서 : 관리팀
- ③ CCTV 관리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.

**제 3 조 (발설 금지)** 관리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되는 정보를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 4 조 (정보의 보관)** ① 녹화방법 및 시간은 DVR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사건, 사고 등으로 기록 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CD 등 보조기록장치에 보관하는 경우는 보관사유의 소멸시 즉시 삭제 폐기한다.

**제 5 조 (보관)** 화상정보의 보관은 DVR의 HDD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 6 조 (정보의 제공)**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“자”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① 사건, 사고 등에 정보열람을 요청하는 경우
- ② 범죄의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
- ③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

**제 7 조 (정보의 제공절차)** 화상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 8 조 (비밀유지 의무)**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“자”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**제 9 조 (안내판 설치)** 학교 내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안내판을 설치한다.

- ① CCTV 설치의 목적
- ② CCTV 시설 담당부서 책임자 및 연락처
- ③ 설치, 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- ④ 안내판 설치(설치목적, 촬영범위, 시간)

### 부 칙

-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”에 따른다.
- ② 이규정은 2008. 1. 1일부터 시행한다.